

세계반도핑규약

치료목적 사용 면책에
대한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RAPEUTIC USE
EXEMPTIONS

2005년 1월 발효

전 문

세계반도핑규약(World Anti-Doping Code) 치료목적 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 TUE)에 대한 국제표준은 세계 반도핑 프로그램의 2단계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국제표준이다.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에 대한 국제표준의 개발은 국제경기연맹,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반도핑기구 및 개정된 도핑관리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Doping Control ; ISDC)상의 관련기관들의 여러 절차와 규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 ; WADA)가 많은 전문가들과 검토 및 토의하여 준비하였다.

경우에는 영어가 우선한다.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에 대한 국제표준은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차 례

제 1 장 : 서문, 규약(Code) 규정과 정의.....	4
1.0 서문과 범위	4
2.0 규약(Code) 규정	5
3.0 용어의 정의	6

3.2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용어	8
--	---

제 2 장 : 치료목적 사용면책 허가를 위한 표준.....	9
4.0 치료목적 사용면책 허가기준.....	9
5.0 정보의 기밀성	10
6.0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s)	11
7.0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절차.....	11
8.0 약식 치료목적 사용면책 절차	13
9.0 정보센타(Clearinghouse).....	14

제 1 장 : 서문, 규약의 규정과 정의

1.0 서문과 범위

있다.

규약(Code)은 선수 및 그 의료진의 치료목적 사용면책 (즉,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에 대한 국제표준은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허가기준, 개인정보의 보호,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구성 및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 표준은 규약에 정의된 모든 선수, 즉 건강한 선수 및 장애인 선수에게 적용된다.

세계 반도핑 프로그램은 모든 국제 및 국가 반도핑 프로그램이 가장 잘 실행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포함하며, 그 주된 요소는 규약(Code)(제1단계), 국제표준(제2단계), 그리고 최상의 실행모델(제3단계)이다.

규약(Code)의 서론에서는 국제표준의 목적과 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반도핑프로그램 내용에서의 서로 상이한 기술적 및 운영적 측면에 대한 국제표준은 가맹기관 및 정부와의 협의 하에 개발되고,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 WADA)에 의해서 인준될 것이다. 국제표준의 목적은, 반도핑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부분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반도핑기구간에

하에 수정할 수 있다. 규약(Code)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국제표준과 그 개정안은 국제표준이나 개정안에 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국제표준(기타 다른 대안이 되는 표준, 절차에 반대되더라도)의 준수는, 국제표준에 따라 진행된 절차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규약(Code)에 명시된 정의는 이탤릭체로 표시했고,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에 대한 국제표준에서 추가로 정의된 단어는 밑줄을 그었다.

2.0 규약(Code) 규정

규약의 다음 조항이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에 대한 국제표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규약 4.4 치료목적의 사용 (Therapeutic Use)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을 승인하는 절차에 대한 국제표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각 국제경기연맹은 국제수준의 선수나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어떤 선수라도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각국의 반도핑기구(관할권 내 국제수준이 아닌 선수)가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을 신청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한

또는 국가적 수준의 선수에게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부여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WADA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자발적으로 국가반도핑기구의 검사대상자명부에 포함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수준의 선수에 대해 허가된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조사할 수 있다. 나아가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거부당한 선수의 요구에 따라 WADA는 그 거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WADA는 그러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의 허가 또는 거부가 치료목적 사용면책의 국제표준에 일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을 반복할 수 있다.

규약 13.3 ‘ 치료목적 사용면책’ 허가 또는 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의한 치료목적 사용면책 허가 또는 거부에 대한 반복에 대하여서 선수 또는 반도핑기구는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반도핑기구의 치료목적 사용면책에 대한 거부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반복하지 않은 경우 국제수준의 선수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그 밖의 선수는 13.2.2에 기술된 국가 차원의 재심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재심기구가 치료목적 사용면책의 거부 결정을 반복한 경우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규약 14.5 도핑관리 정보센터 (Doping Control Information Clearing House)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국제수준의 선수와 국가반도핑기구가 관리하는 검사대상자명부 상의 국내수준의 선수에 대한 도핑관리와 결과 관리를 위한 중앙정보센터(A Central Clearing House)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러 반도핑기구간의 검사배분계획의 조정을 꾀하고 불필요한 검사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각 반도핑기구는 모든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외 검사에 대하여 검사 과정의

국가올림픽위원회,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위 통계 정보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보고할 것이다.

규약 15.4 상호 인정

제13항에 규정된 재심권에 따라, 규약과 양립하는 규약 가맹기관의 어떠한 치료목적 사용면책, 청문 결과 또는 최종 조정도 다른 가맹기관에 의해 수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가맹기관은 규약을 승인하지 않은 다른 기구의 동일한 결과도 그 기구의 규정이 규약과 양립 가능한 경우 존중하여야 한다.

3.0 용어와 정의

3.1 규약(Code)에서 정의한 용어

반도핑기구(Anti-Doping Organization) : 도핑관리과정에 대한 규칙을 채택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가진 가맹기관을 말한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도핑검사를 실시하는 주요 국제경기조직위원회, 세계반도핑기구, 국제경기연맹, 국가반도핑기구를 포함한다.

선수(Athlete) : 도핑관리 목적에서는, 국제경기연맹에서 정의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자 및 국가반도핑기구가 정의하는 국내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와 해당 국가반도핑기구에 의해서 지정되는 하위 스포츠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도핑 정보와 교육의 목적에서는, 어떤 가맹기관이나 국가 또는

규약(Code): 세계반도핑규약(The World Anti-Doping Code)

도핑관리(Doping Control) : 도핑 검사의 계획, 시료 채취와 취급, 검사실 검사, 결과 관리, 청문 및 재심 등의 과정을 의미한다.

경기기간중(In-Competition) :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경기연맹이나 기타 반도핑기구의 규칙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경기기간 중 검사는 특정 경기와 연관되어 선발된 선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국제수준의 선수(International-Level Athletes): 한 개 이상의 국제경기연맹에 의해서, 국제경기연맹에서 관리하는 검사대상자명부(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 규약(Code)을 지지하기 위하여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의해서 채택된 국제표준. 국제표준 (다른 대안적 표준, 관행 또는 절차에 대립되더라도)을 준수하는 것은 국제표준이 명시한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해야 함.

국가반도핑기구(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 : 국가 차원에서 반도핑규칙을 채택 및 시행하고, 시료 채취, 검사결과의 처리, 청문 과정을 감독할 주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구. 만일 해당

경기기간외(Out-of-Competition) : 경기기간중 검사가 아닌 검사

금지목록(Prohibited List)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이 규정된 목록.

금지방법(Prohibited Method) : 금지목록에서 명시된 행위

금지약물(Prohibited Substance) : 금지목록에서 기술된 약물

검사대상자명부(Registered Testing Pool) : 각 국제경기연맹과 국가반도핑기구에 의해서 관리되고 국제경기연맹이나 기구의 경기기간중 또는 경기기간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정상급 선수들의 명단

가맹기관들(Signatories) :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 주요 국제대회조직위원회, 국가반도핑기구, 그리고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포함하여 규약(Code)에 서명하고 규약(Code)을 준수기로 합의한 기관

검사(Testing) : 검사배분계획, 시료 채취, 시료 취급, 검사실 시료 수송 등의 과정을 포함한 도핑관리과정들

WADA : 세계반도핑기구

3.2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용어들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 Therapeutic Use Exemption(치료목적 사용면책)

약식 치료목적 사용면책(ATUE) : 국제표준 8장에 기술된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위한 축약된 과정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 : Therapeutic Use Exemption Committee) :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관련 반도핑기구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세계반도핑기구의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 :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임명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제 2 장 : 치료목적 사용면책 허가의 기준

4.0 치료목적 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 TUE) 허가의 기준

금지목록에 포함된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을 선수에게 허용할 수 있다.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가 검토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는 반도핑기구가 임명하고 다음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될 것이다.

주해: 이 기준은 규약(Code)에 정의된 모든 선수 즉, 건강한 선수와 장애인 선수에게 적용된다. 이 기준은 개별선수의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선수에게 점진적 면책의 다른 선수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다.

한다.

4.2 선수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일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수가 뚜렷한 건강상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4.3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으로 어떤 종류의 내생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4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4.5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의 필요성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금지목록상의 물질을 사용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6 반도핑기구에서 허용한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은 다음 경우에 철회된다.

- a. 면책을 허가한 반도핑기구가 부과한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 b.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기간이 만료된 경우
- c. 반도핑기구가 치료목적 사용면책(TUE)를 철회한 경우

주해 : 모든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에 의해

또는 철회와 부합하는 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4.7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인정하지는 않는다.

a. 응급 치료 또는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b. 예외적 상황 때문에 도핑관리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치료목적 사용면책위원회(TUEC)에서 검토할 시간이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주해: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 전에,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 또는 급성 질환은 드물다. 마찬가지로, 긴급한 경기 때문에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을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드물다.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허가를 결정하는 반도핑기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허용할 내부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5.0 개인 정보 보호

5.1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 위원과 그 외의 독립적인 의학 전문가, 과학 전문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관리자 및 치료목적 사용면책(TUEs)에 대한 재심을 검토하는 자에게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모든 상세 사항이 선수의 신분에 대한 노출 없이 전달될 것이다. 신청자는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의 결정이

5.2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 위원과 관련된 반도핑기구의 행정 절차는, 그들의 활동을 엄격한 기밀성의 유지 하에 진행해야 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의 모든 위원과 관계 직원은 기밀 업무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a. 선수와 선수 치료에 관여한 의사가 제공한 어떤 의료 정보나 자료
- b. 관련된 의료진의 이름을 포함한 신청서의 모든 세부 사항.

선수가 약식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나 세계반도핑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선수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의 승인 또는 갱신을 받지 못한다.

6.0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s)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s)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구성되고 활동한다.

6.1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s)는 선수 치료에 경험이 있고 임상, 스포츠, 운동약학에 건전한 지식이 있는 3인 이상의 의사를 포함해야 한다.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의 과반수는 반도핑기구에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 선수의 치료의 경험이 있는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6.2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s)는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의학 및 과학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3 세계반도핑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는 6.1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세계반도핑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는 반도핑기구가 부여한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다. 규약(Code) 4.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계반도핑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는 반도핑기구로부터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요청을 거부당한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

7.0 ‘ 치료목적의 사용면책(TUE)’ 신청 절차

7.1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의 접수가 있는 경우에 검토된다(별표 1 치료목적 사용면책 양식(TUE form) 참고). 신청 절차는 의료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취급된다.

7.2 별표1에 정해진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서 양식은 반도핑기구에 의해 정보에 대한 추가요청이 포함되도록 수정될 수 있으나, 항목이나 내용이 삭제되어서는 안된다.

7.3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서 양식은 반도핑기구가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나 영어 또는 불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안되며, 신청서에는 선수의 스포츠, 종목, 팀 내 역할이나 경기 중 포지션이 명시되어야 한다.

7.5 이전에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과 신청을 제출받은 기관 및 그 결정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7.6 신청서는 전반적인 병력, 관련 검사 결과 및 영상검사 소견을 포함해야 한다.

7.7 반도핑기구의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가 추가적인 조사, 검사 및 영상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자나 그가 속한 국가 경기단체의 비용으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7.8 신청서에는 선수의 치료를 위해서는 금지된 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며 허용된 대체약물의 사용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의사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7.9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용량, 사용 빈도, 투약 경로 및 투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7.10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의 결정은 관련문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반도핑기구를 통해 선수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반도핑기구의 검사대상자명부(Registered Testing

사용면책(TUE)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허가서를 즉시 발부하여야 한다.

7.11 a. 선수의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규약 4.4에 따라 세계반도핑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는 반도핑기구의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결정을 반복할 수 있다. 선수는 반도핑기구에 제출한 치료목적 사용면책(TUE)관련 정보 일체를 신청비와 함께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검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원래의 결정은 유효하다. 재검토 과정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b.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는 30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7.12 재검토에서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의 허가와 관련된 결정이 반복될 경우, 이 결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이 적용되던 기간의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선수에게 통보된 14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한다.

8.0 약식 치료목적 사용면책(ATUE) 신청 절차

8.1 금지목록에 포함된 일부 약물은 선수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학적

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8.2 이러한 약식절차가 허용되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흡입 Beta-2 작용제(formoterol, salbutamol, salmeterol, terbutaline), 비신경계 경로로 사용하는 부신피질호르몬(glucocorticosteroids)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8.3 위 약물 중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수는 반도핑기구에 치료적 목적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단서에는 별표 2에 포함된 대로, 진단, 물질 명칭, 복용량, 투약 방법 및 치료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8.4 약식 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약식절차를 따르는 금지약물의 사용허가는 반도핑기구가 정식통보를 수령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완전하지 않은 통보는 신청자에게 반송되어야 한다.

b. 완결된 통보를 받은 반도핑기구는 즉시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있는 선수의 국제경기연맹, 경기단체, 반도핑기구에도 알려야 한다. 반도핑기구는 국제수준의 선수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만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알린다.

c. 약식 치료목적 사용면책(ATUE)에 대한 통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되지 않는다.

사용면책위원회(TUEC)에서 검토할 시간이나 기회가 충분치 못한 경우

8.5 a.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나 세계반도핑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에 의한 재검토는 약식 치료목적 사용면책(ATUE)이 발효 중 언제라도 가능하다.

b. 선수가 약식 치료목적 사용면책(ATUE)의 거부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세계반도핑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는 선수에게 추가적인 의료정보를 선수의 비용 부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6 약식 치료목적 사용면책(ATUE)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나 세계반도핑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WADA TUEC)에 의해서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선수, 선수가 속한 국제경기연맹 및 관련 반도핑기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7 그 취소는 선수에게 그 결정이 통보된 즉시 효력을 지닌다.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따라 치료목적 사용면책(TUE)을 신청할 수 있다.

9.0 클리어링 하우스 (Clearinghouse)

9.1 반도핑기구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모든 치료목적 사용면책(TUE)과 7장에 따라 발부된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9.3 정보센터(Clearinghouse)는 의료정보의 기밀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